

2013. 1-12월 심의결정 통계

1. 업종별 심의내용

결정구분 업종	계	주의 및 경고	광고수정	주의·경고 및 광고수정	광고중지	관계기관 통보	임시중지 명령요청
기초재							
식품·음료	150		94	38	18		
가정용품	7		2	4	1		
제약(의료기기)	41		10	6	25		
건강관련용품	49		19	22	8		
화장품·세제	99		77	18	4		
일반산업기기							
정밀사무기기							
전기·전자	2		2				
수송기기							
화학·공업	5		1	4			
건설·건재	94	1	91	2			
출판·교육	3		1		2		
의류·섬유	9		4	3	2		
유통	134		122	12			
금융·보험·증권							
서비스·오락	11		4	1	6		
관공서·단체							
의료	97				97		
그룹·기타	1				1		
계	702	1	427	110	164		

2. 심의결정이유별 내용

결정이유	계
공정성 · 윤리성 · 합법성 · 인간의 존엄성 · 진실성 위반 표현(4~7조)	702
광고의 품위상실, 선정성 표현(8조, 18조)	3
광고주 불표시(9조)	
소비자 오도 표현(10조)	603
주장의 무입증(11조)	497
추천, 보증(12조)	29
배타적인 광고(14조)	
자료 등의 인용(15조)	
부당비교 및 배타적 표현(16~17조)	3
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(19조)	
소비자 조사(20조)	
광고에 부적당한 언어사용(22조)	
어린이 · 청소년, 어린이 보호(23조, 24조)	
경품 · 할인특매, 사행심 조장, 미끼광고(28조, 29조)	
광고물의 식별 불가능(30조)	
식품광고의 소비자 오인 표현(31조)	156
주류 · 담배광고의 부당표현(32조, 33조)	4
효능효과 과신 · 과장(34조)	70
화장품광고의 소비자 오인 표현(35조)	92
의약품 및 의료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(36조, 37조)	146
금융 · 투자자문업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(38조, 39조)	
통신판매 광고 과장 표현(40조)	
학원, 학습지 등 광고 과장표현(42조, 43조)	2
대리점 모집 광고 과장표현(44조)	136
부동산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(45조)	92
영화 · 비디오 광고 부당 표현(46조)	
기타	
계	2535

※결정이유 건수가 결정 건수보다 많은 것은 한 결정에 2개 이상의 결정이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.